홍익대학교 학사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학사 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및 수강신청

- 제2조(등록) ①등록은 매학기 개강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 ②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2조의2(등록금 등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3.1>
 - ②이미 납부된 등록금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3.1, 2011.3.1>
- 제3조(수강신청의 절차)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한다.
- 제4조(수강허용 학점) ①수강신청 학점은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학점 한계 내에서 신청할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 평균이 "B⁺"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1.〉
 - ②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③동일교과목을 재수강 신청없이 중복하여 수강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만을 졸업소요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매학기 15학점 미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각종 장학금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학칙 제49조에 의거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장과 협의를 거쳐 수강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소속대학장이 이수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 ⑥학칙 제 35조 제3항에 의거 본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입학 후 6학점 범위내에서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제1항의 이수한계 최대학점보다 수강신청 학점이 적은 경우, 그 부족한 학점 중 최대 2학점을 차기 학기의 이수학계 학점에 추가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1.〉
 - ⑧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중인 자는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9.1.>
- 제5조(이중수강불허) 동일교시에 배정된 교과목은 중복해서 수강신청할 수 없다.
- 제6조(학과목 선정순위) 수강신청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하급학 년의 미취득 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하며 먼저 이수를 요하는 과목부터 순서에 맞추어 신청하

여야 한다.

- 제7조(석사학위 과정 교과목 수강) ①학칙 제 35조 제2항에 의거 직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 평균 평점이 "B⁺"이상인 자로서 석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기간 중에 소속 학과장과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씩 9학점까지 석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
 - ②학사학위 과정의 취득 학점이 132학점(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 162학점)을 초과하고 석사학위 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교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의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1., 2018.3.1.〉
- 제7조의2(학·석사연계과정 교과목 수강)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과목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3.1.〉
- 제8조(계절학기 수업) 방학기간 중 조기졸업 희망자와 학점 미취득자에게 학점취득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 ①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학점당 최소 15시간으로 하고 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하며, 수강 료는 기본 수강료에 학점당 수강료를 합산하여 정한다.
 - ③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소요 학점으로만 산입한다.
 - ④ 수강신청 학생수가 15명 미만인 과목은 원칙적으로 개설하지 아니한다.
 - ⑤ 휴학자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휴학자의 성적처리는 재학생의 성적처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군휴학자(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는 원격수업(사이버강좌) 수강에 한한다. 휴학자가 계절학기 수업 학점 취득으로 졸업여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복학 후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제9조(졸업학점 등) ①비공학계열전공자(경영대학, 사범대학 및 미술대학은 제외하되, 예술학과는 포함)는 교양필수과목 6학점, 특성화교양과목 3학점, 공통교양과목 7개 영역 중 6개 영역('예술과 디자인', '제2외국어와 한문'영역을 반드시 포함)에서 각 1과목 이상, 전공기초영어, 전공과목 50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선택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 인정된다.
 - ②공학계열전공자(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 제외)는 기본소양과목 23학점 (기초교양 6학점, '예술과 디자인'과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6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이상, MSC과목 20~27학점(공과대학, 건축도시대학도시공학과는 24학점, 과학기술대학은 27학점, 게임소프트웨어전공은 20학점)이상, 전공기초영어, 전공과목 50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성화교양과목 3학점, 교양선택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하여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 인정된다. 〈개정 2014.3.1., 2016.3.1., 2018.3.1., 2019.3.1., 2020.3.1.〉
 - ②-1 MSC과목의 분야별 최소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0.3.1., 개정 2016.3.1.,

2018.3.1., 2020.3.1.>

구분	과학분야	수학분야	전산분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비 인증과정 제외),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9	9	6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비인증과정	18		6
과학기술대학 (건축디자인전공 제외)	8	3	2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	12	5

②-2 MSC과목 과학분야의 세부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0.3.1.> <개정 2016.3.1., 2018.3.1.. 2020.3.1.>

구분	세부요건			
공과대학,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고, {대학물리(2), 대학물리실험(2)}와 {대학화학(2), 대학화학실험(2)} 중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함. 단, 전자전기공학부는 대학물리(2), 대학물리실험(2),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고,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2), 대학화학실험(2)} 중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함 단,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는 해당 없음			
과학기술대학 (건축디자인전공 제외) <개정 2018.3.1.>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바이오화학공학과는 대학생물(1), 대학생물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게임소프트웨어전공	대학물리(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②-3 공학교육인증과정에 소속된 자의 졸업요건은 별도의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 내규에 따른다.<신설 2010.3.1.>

③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교양필수 6학점, 전공기초영어, 일반선택과 교양선택을 합하여 29학점(건축학 인증기준 요구분야별 이수학점)이상, 전공과목 133학점(전공필수 112학점 포함)이상을 포함하여 16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은 교양필수 6학점, 특성화교양과목 3학점, 전공기초영어, 일반선택과 교양선택을합하여 32학점(건축학 인증기준 요구 분야별 이수학점)이상, 전공과목 130학점(전공필수 112학점 포함)이상을 포함하여 16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건축학전공은 교양필수6학점, 특성화교양과목 3학점, 전공기초영어, 전공 80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이상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개정 2014.3.1., 2016.3.1., 2018.3.1., 2019.3.1., 2020.3.1.〉 ④경영대학 경영학 전공자는 교양필수과목 6학점, 특성화교양과목 3학점, 공통교양과목 7개영역 중 6개 영역('예술과 디자인',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반드시 포함)에서 각 1과목 이상, 전공기초영어, 전공과목 45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 이상과 전공기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 인정된다. <개정 2014.3.1., 2016.3.1., 2019.3.1.>

⑤사범대학 전공자는 교양필수과목 6학점, 특성화교양과목 3학점, 공통교양과목 7개 영역 중 6개 영역('예술과 디자인',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반드시 포함)에서 각 1과목 이상, 전공기초영어, 전공과목 57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 이상과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 인정된다.<개정 2014.3.1.. 2016.3.1.. 2019.3.1.>

⑥미술대학 전공자(예술학과 제외)는 교양필수과목 6학점, 특성화교양과목 3학점, 공통교양과목 7개 영역 중 6개 영역('예술과 디자인',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반드시 포함)에서 각 1과목 이상, 전공기초영어, 전공과목 48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 이상과 전공기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미술대학 공통 전공선택과목 중 2과목(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8 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 인정된다.〈개정 2014.3.1., 2016.3.1., 2016.9.1., 2019.3.1.〉

제9조의2(공학교육인증) 삭제

- 제9조의3(학사학위 취득 유예) ①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야 한다.
 - ②학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 제5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9.3.1.〉
- 제10조(수강신청한 과목의 변경) 일단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강의시 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전산망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있다.
- 제11조(폐강기준)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전공과목과 수강인원 20명 미만의 교양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3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12조(시험) 각 교과목에 대한 중간 및 기말시험은 매학기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한다.

제13조(성적평가방법) ①각 교과목의 성적은 수시 고사성적과 출석, 예습, 복습성적을 종합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실험 및 실기시험 성적은 평상시의 성적과 출석 등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상대평가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1.22.>

(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과	목	수강인원(명)	분류	A학점(%)	A+B학점(%)
교 양 전 공 계 열 선 수 전 공 기 초 일 반 선 택	21이상	A type	최대 30	최대 70	
	16~20	B type	최대 35	최대 75	
		15이하	C type	최대 40	최대 80
교	직		E type	최대 40	최대 90

- 제13조의2(영어전용강좌) ①영어전용강좌(영어관련 전공 및 교양과목, 원어민 강좌 제외)를 수강하면, 성적증명 발급시 추가로 일반선택 1학점(P/F)을 부여한다. 다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1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11.3.1〉
 - ②추가로 인정하는 1학점은 이수학점 한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학 중 최대 5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 ③재수강시 기 취득한 1학점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과목의 본래 학점만 취득된다. <개정 2016.3.1.>
 - ④영어전용강좌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급제·낙제제) ①학칙 제37조 제4항과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타학과 개설과목을 급제·낙제 제(이하 PA/FA제라 한다)로 수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PA/FA제에 의한 신청임을 명시하여 수강신청을 할수 있다.
 - ②PA/FA제도에 의한 수강신청은 매학기 1과목에 한 한다.
 - ③PA/FA제로 수강한 과목의 성적평가는 급·락만 구분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④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때는 급제로 하여 "PA" (Pass)로 표기하고, 그 미만일 때는 낙제로 하여 "FA" (Fail)로 표기한다.
 - ⑤PA/FA제로 이수한 성적은 졸업자격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⑥PA/FA제로 수강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 철회는 학칙 제 38조에 준한다.
 - ⑦PA/FA제로 이수한 성적은 취소할 수 없으며, 재수강할 수 없다.
- 제14조의 2(P/N 교과목) ①학칙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P/N 교과목을 수강하기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②P/N 교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수는 각 과목마다 정해진 제한 학점에 따르며, P/N 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P/N 교과목의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때는 "P"로 표기하고, 그 미만일 때는 "N"로 표기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④P/N 교과목으로 이수한 성적은 졸업자격 학점에 포함된다.
 - (5)P/N 교과목의 수강신청 철회는 각 과목의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 ⑥P/N 교과목은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N"인 경우 재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4.9.1〉
- 제15조(성적대체) ①등록을 필한 자가 수업일수 2분의1이 경과한 후에 입대휴학을 한 경우에는 성 적대체원서(소정양식)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 이하 같다.)에 제출

- 하면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1.3.1., 2018.3.1.>
- ②성적대체원서를 제출한 자의 성적은 출석 및 수시로 평가한 시험성적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다만, 일반 휴학자에게는 성적대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추가시험신청) ①병역의무, 친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추가시험 신청서(소정양식)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②추가시험 허가를 받은 자는 담당교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중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시험의 성적은 "A°"급 이상을 불허한다.
- 제17조(성적평가 유보) ①학칙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성적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 ② "IN" 으로 처리된 교과목의 최종성적은 학사일정상 종강 후 별도의 성적정정기간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IN" 성적은 "F"로 자동 처리된다.
- 제18조(부정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으며 부정행위를 한 이후의 당해시험 기간 중의 모든 교과목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19조(시험성적의 급락) 시험의 급제는 60점 이상을 말하며 그 미만 점수는 낙제로 한다.
- 제20조(재수강 등) ①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인 경우에는 타 교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 ②이미 취득한 일부과목 또는 직전학기 전과목의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할 교과목을 포함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학기 재수강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1.3.1〉
 - ③과목 재수강 신청은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교과목당 1회만 허용하며, 취득 가능 성적은 "A0"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재수강에도 불구하고 취득 성적이 "F"인 경우 재수강 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 2020.3.1.〉
 - ④과목 재수강 신청은 학기당 1개 교과목만 허용한다. 다만, 취득 성적이 "F"인 교과목은 학기당 재수강 과목 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9.3.1.〉 〈개정 2020.3.1.〉
- 제21조(학업성적 산출) 학업성적의 평균점수는 각 과목의 취득평점에 그 교과목 학점 수를 곱한 값의 총계를 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제22조(학점취소) 과목재수강은 해당 학기 종강일에, 학기재수강은 신청이 승인된 후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한다. 다만, 재수강으로 인하여 과목이 취소되어도 해당과목에 대한 성적경고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

제4장 성적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제23조(성적이수표의 배부) 매학기 성적이수표는 학기말에 학생에게 배부 또는 우송한다.

제24조(성적이의신청) ①해당학기 성적을 열람한 후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 정기간내에 담당교수에게 문의할 수 있다. ②성적표에 기재 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기일이 경과하면 정정할 수 없다.

제25조(성적열람) 삭제

제26조(4학년의 학적부 열람) 삭제

제5장 교직과정의 이수

- 제27조(교직과정의 설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학과에 한하여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1.22.>
- 제28조(교직과정 이수 시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1학기부터 이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 제29조(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1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소정양식)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범대학 교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과에서는 신청자에게 접수 확인서를 발급한다.
 - ②학과장은 제2학년 종료 시까지 전항의 이수 희망자 중에서 인성·적성·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학과 교직승인 인원 범위내에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여 그 명부를 작성, 교직과에 제출하다. 〈개정 2015.1.22.〉
- 제30조(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자격)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표시과목에 관련된 전 공과목 50학점 이상·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평점 환산점수 성적이 100 분의 75점 이상, 교직과목 100분의 8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일 때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5.1.22.>
- 제31조(사범대학의 교직과정)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의 교직과목은 교직공통 필수과목이며, 4주간의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총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 제32조(교직과목 이수영역) 교직과정의 영역별 이수 교직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개정 2009.3.1., 2019.9.1.>
 - ②교직소양 : 6학점·3과목 이상<개정 2009.3.1, 2019.9.1.>
 - ③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개정 2009.3.1>

제6장 부전공

- 제33조(자격) 직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B°"이상인 자로서 제2학년이후의 학기 개시 이전에 부전공 신청서(소정양식)를 부전공 해당 학과장(학부의 전공지도교수 및 학부장), 학장을 경유해서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부전공을 이수할 자격을 인정한다.
- 제34조(이수학점) 부전공은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에서 부전공 학과의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C°"이상인

자를 부전공 이수자로 인정한다

제35조(수강 지도)

- ①부전공 이수 지원자의 부전공 교과목에 대한 수강지도는 부전공학과장이 하되, 필요에 따라 부전공 지도교수를 따로 지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②졸업할 때까지 부전공 학과에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 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6조(실험 실습비)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로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제37조(자격취득) ①부전공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정은 부전공 학과장이 행하며, 사정결과를 주전 공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부전공 자격 신청서(소정양식)를 주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전과

- 제38조(전과의 범위) 본교 각 대학간의 전과는 소정의 평가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캠퍼스가 아닌 경우에는 학부 또는 학과별 여석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39조(전과의 허용조건) 전과는 학과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 전출·입을 허용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다.
- 제40조(전과의 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20.1.1.>
 - 1. 정원외 전형 입학자
 - 2. 정원내 실기위주전형 및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
 - 3. 편입학자
- 제41조(전과의 자격) 전과의 신청자격은 2학년 전과희망자는 33학점, 3학년 전과희망자는 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건축학부는 2학년 전과희망자에 한하며 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건축학부 1학년 설계수업을 이수하여야하며, 건축공학부의 건축디자인전공으로의 전과는 2학년에 한하며 건축공학부 1학년 설계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42조(전과의 승인절차) ①재학 중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학기 소정기간 내에 보증인이 연서한 전과원서(소정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 ②교무처장(단,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은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 희망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를 확정한다.<개정 2017.9.1.>
- 제43조(학점 인정) 전과가 확정된 학생은 전입학과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적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과 목이 전입학과의 교양, 전공기초 및 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개정

2010.3.1>

- 제44조(전과의 결정) 전과의 결정은 이미 취득한 성적 평균평점 및 전과고사(면접 등)의 성적을 합산하여 그 총점 순으로 결정한다.
- 제45조(장학금 지급제한) 전과가 허가된 자의 당해 학기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1.>

제8장 복수전공

- 제46조(자격) ①복수전공 이수는 본 대학교 제 2학년부터 이를 허용한다.
 - ②복수전공신청은 2학기이상 33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③타 캠퍼스 학과의 복수전공 신청자격은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3.1>
- 제47조(복수전공 이수·전공, 전공지도) ①학칙 제41조 1항에 따라 복수전공은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에서 이수 가능하나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5년제)는 제외된다.<개정 2010.3.1., 2018.3.1., 2020.3.1.>
 - ②복수전공의 철회는 수업년한 최종학기 졸업사정기간 이전까지 철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 ③복수전공 신청을 받은 학과는 당초 입학한 학생과는 별도로 복수전공 신청자의 전공지도를 위해 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공지도별 지도대상 학생명단은 학기 개시 후 1개월 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개정 2011.3.1〉
- 제48조(복수전공의 허가) ①1학년 수료 후 매학기 개시 이전에 복수전공 신청서(소정양식)를 복수 전공 신청학과의 학과장(학부의 전공지도교수 및 학부장), 학장을 경유해서 학사지원팀에 제 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 2018.9.1.>
 - ②복수전공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학과 입학정원의 10%이상 ~ 30%이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③복수전공 선발기준은 제46조에 준한다.
- 제49조(학점이수) ①복수전공 이수요건은 제9조에서 정한 복수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동일하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학점 체계의 상이함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시행한다.
 - 가. 공학계열→공학계열: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0.3.1>
 - 나. 비공학계열→공학계열: 복수전공 학과의 MSC 이수,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0.3.1>
 - 다. 공학/비공학계열→비공학계열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0.3.1>
 - 라. 〈삭제〉 〈삭제 2010.3.1〉
 - 마. 사범대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 입학생과 동일하게 학점 이수 <개정 2010.3.1.,

2016.3.1>

- 바.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전공 필수과목 전부를 이수 (단, 1학년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은 제외) <개정 2010.3.1., 2020.3.1.>
- 사. 미술대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수 〈신설 2010.3.1〉
- 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 학부(과)→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 학부(과) : 복수전공학부(과)의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 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 학부(과) 또는 타 단과대학 → 예술학과 : 예술학과의 전공 필 수를 모두 포함하여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 예술학과→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 학부(과) : 전공기초과목 중 기초평면(1)(2), 기초 입 체(1)(2) 과목과 복수전공 학부(과)의 전공 36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 이상 이수
- 타 단과대학→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 학부(과) : 전공기초과목과 전공 36학점(전공필수 모두 포함) 이상 이수
- 아. 경영대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전공기초과목과 전공 36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이수 <신설 2016.3.1.>

②주전공의 전공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주전 공 취득학점에 포함되며 복수전공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전공의 선택과목이 복수전공의 필수과목과 동일한 경우,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복수전 공의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복수전공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 학부(과) 전공자가 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 학부(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미술대학 공통 전공선택과목 이수학점 중 4학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부(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3.1〉

- 제50조(복수전공의 이수연한) 재학연한 이내에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복수전공 이수자격을 상실한다.
- 제51조(복수전공자의 졸업) ①복수전공자는 당초 입학한 학과의 전공 또는 학부의 전공 중 하나의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자는 전과된 학과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자는 제9조 및 제49조에 규정한 학점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제9장 휴학·복학 및 자퇴

- 제52조(휴학의 종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8.9.1.>
 - 1. 일반휴학 : 일신상의 사유로 하는 휴학
 - 2. 입대휴학 : 입대로 인한 휴학
 - 3. 질병휴학 : 질병을 사유로 하는 휴학
 - 4. 임신·출산휴학 :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
 -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후학

- 6. 창업휴학 :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
- 제53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학은 총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3.1., 2018.9.1.〉
 - 1. 입대휴학
 - 2. 임신·출산휴학
 - 3. 육아휴학
 - 4. 창업휴학
 - ②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복학하여야할 시기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속하여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4조(휴학원서의 제출)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1., 2013.3.1., 2018.9.1.>
 - ①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임신·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 질병 및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히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5조(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경과한 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복학 후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임신·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3.3.1., 2018.9.1.>
- 제56조(입대휴학) ①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일반휴학 중인 자가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10일전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입대휴학자가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귀향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사지 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 ③군제대자(만기, 의병, 의가사)는 제대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제57조(복학수속) 휴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원서를 매학기 개강 전 소정 기간 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복학 허가를 받아야한다.<개정 2011.3.1>
- 제58조(입대 휴학자의 복학 불허조건) 입대 휴학한 자가 귀향 또는 군 복무 단축 등으로 학기도중 복학을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가 1개월 이상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제59조(자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서(소정양

식)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재입학

- 제60조(재입학원서 제출) 학칙에 의하여 자퇴한자 또는 제적된 자(학칙상 재입학 불가능한 자 제외)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재입학의 허용학년 등) ①재입학은 캠퍼스별 전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재학 중의 성적을 참작하여 원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은 모집단위별 여석을 적용한다.
 - ②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③재입학은 제적된 날이 속한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학칙 제31조 제7호의 성적불량 제적자는 2년)이내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4학년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62조(재입학의 조건) 재입학은 캠퍼스별 전체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하되 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여석이 있어도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3조(재입학금 납부)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장 졸업논문

- 제64조(논문의 구분) 졸업예정자가 제출하는 졸업논문에 갈음하여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조사보고, 공인기관에서 외국어 시험을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작품제작,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5조(논문의 제출 자격)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최종 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 제66조(논문작성 계획서 제출시기) 졸업논문작성 대상자는 최종학년 1학기 초 15일 이내에 계획서 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7조(지도교수 및 종합시험 운영위원회) ①학과장은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15일 이내에 해당학 과 전임교수 중에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학장은 확정된 논문 지도교수 명단을 4월초까지 교무처장(단,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7.9.1.>
 - ③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④졸업논문을 종합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시행한다.
- 제68조(논문의 규격 및 제출시기) ①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대학별로 통일되도록 한다.
 - ②논문은 매년 10월초(후기졸업예정자는 5월초)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종합시험은 10월초(후기 졸업예정자는 5월초)에 시행한다.

- 제69조(논문의 심사) ①논문심사위원은 학과장이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 지도 교수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 ②심사위원은 2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논문심사의 판정은 합격·불합격으로 한다.
 - ④종합시험의 결과는 "D°" 학점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⑤실기발표자의 작품은 심사 후 공개(전시회)되어야 한다.
- 제70조(논문심사 결과조치) ①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학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작성 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 53조 제 1항에 의한 졸업을 인정한다.
- 제71조(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자는 재학연한 안에 재제출하여 야 하다.
- 제72조(논문심사 합격의 효력)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해학 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 해당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그 합격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장 학생결석 처리

- 제73조(결석의 허용한도) 결석의 허용한도는 한학기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3.1.>
- 제74조(결석의 허용한도와 성적) 결석의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F"를 부여한다. <개정 2020.3.1.>
- 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 주할 수 있다.
 - 1. 직계가족의 사망(증빙서 첨부)
 - 2.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증빙서 첨부)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학생처장(단,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개정 2017.9.1.>
 - 4.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학생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5. 기타 교무처장(단,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개정 2017.9.1.>
- 제76조(출석 인정원 제출) 출석 인정원은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7조(출석 인정원 미제출로 인한 결석처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결석한 자라도 본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 인정원을 제출치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3장 조기졸업

제78조(조기 졸업) ①학칙 제6조에 의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7학기(5년제 9학기) 졸업일 이전 학교가 정하는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인 자는 소정 학점 범위 내에서 차상급 학년의 전 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14장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 제79조(타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칙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타대학(외국대학 포함)과의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학점취득을 원하는 자에게 본교 재학 중 2년 범위 내에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1년 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 2. 타대학 학점교류 지원은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3.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자는 교과목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과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에서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4. 학점교류가 허가된 기간은 위탁교육으로 인정하여 본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 5. 학점교류에 필요한 수속 및 제반경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단, 외국대학에서의 학점교류 희망자는 경비부담에 관한 보증인 서약서(소정양식)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2017.1.1.>
 - 6. 학점교류는 본교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국내대학은 본교와 타 대학간에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르고, 외국대학은 매학기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학점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9.1>
 - 7. 학점교류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은 이수한 대학에서 본 대학 교무처로 우송된 것에 한하여 학과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인정하고 성적평점 누계에 산입하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성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0조(타대학 계절학기) 학칙 제8조 제2항 및 제 3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 및 외국의 대학에서 이수하는 계절학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1. 방학기간 중 국내 및 외국의 대학에서 이수하는 계절학기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2. 계절학기에 대하여는 제79조 제2호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1조(타대학 학생의 학점취득) 학칙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타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재학생에 대하여 본교에서 학점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 1. 타대학(외국대학 포함)의 학생이 본교에서 학점취득을 희망할 경우 학과장, 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장 및 학장이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3. 학점 취득은 국내대학생이 본교와 타 대학간에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르고, 외국대학생은 2년 범위 내에서 매학기 18학점까지로 한다.<개정 2011.9.1>
- 4. 타대학(외국대학포함) 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업을 받은 기간 동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15장 대학입시 공정관리 위원회

- 제82조(대학입시 공정관리 위원회) 학칙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입학의 공정을 기하고 자율감시 체제를 구성, 활용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입시 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하다)를 둔다.
- 제83조(구성)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교수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제84조(임무) ①위원회는 입학시험에 대한 부정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입시관리를 감시하며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입시부정과 채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장 기타

제85조(시행세칙, 편람, 지침) 이 내규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과 편람, 대학과 학과(부), 전공 및 주무부서의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부칙

- 1. 이 시행세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내규는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내규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내규는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내규는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 내규는 199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 내규는 199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①(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본교 학칙 부칙 26에 의거 제적학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재입학을 시키는 경우에는 학칙 제5조 제1항과 학사내규 제61조 내지 제63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학자, 징계제적자, 제적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자, 재학연한 초과자 이미 재입학 사실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재입학 지원학과에 여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을 시키고자할 때에는 학과교수의 심사를 거쳐 소속학과장이 재입학 추천을 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실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교학처장과 소속대학장을 위원으로 하는 제적학생 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 이 개정 내규는 199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졸업학점의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자(재·편입학 및 복학자 포함)는 교양과 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60학점 이상과 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한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의 폐지에 따라 이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과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타 과목을 전공교과로 3학점까지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전공과목에 관한 사항은 1989학년도 입학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②(재수강의 적용시기) 제23조 재수강과목의 학점취소는 199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복수전공자의 경과조치) 1.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복수전공 이수를 허가 받은 자는 계열선수과목의 이수대신 복수전공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다.
 - 2. 1995학년도 이전 복수전공 신청자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4학기 이상 초과 할 수 없다.
- 11. 이 개정 내규는 1998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는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졸업학점의 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자는 교양과목 42학점(계열선수과목 13-15학점)이상, 전공과목 35학점 이상과 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12. 이 개정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학과 5년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학과 5년제 교육과정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종전학칙에 의하여 입학한자 일지라도 5년제 교육과정이 시행 중인 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 5년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14.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내규 제9조 및 제9조의 2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6.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경과조치) 5년제 건축학전공의 졸업학점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내규 제46조 제3항 및 제49조 제1항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9.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1. ①이 개정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영학전공의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학전공의 졸업학점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다.

부칙

①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0조, 제31조, 제32조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2011학년도 이후 편입생 포함)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47조, 제49조(제1항의 '바호 제외)의 개정내규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제81조의 개정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대학과 경영대학에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한 신입생들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0조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내 규를 적용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제7조, 제9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의 개정 내규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 내규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후 입학한 사범대학학생과 2015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항의 1, 제2항의 2 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